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4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서영교·박홍배·임오경

박희승·허 영·이해식

윤준병 • 이재강 • 조인철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 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제2 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 여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 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 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 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 ·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하여서는 제22 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하여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

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 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 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 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 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개 정 안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 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한다)를 할 수 있다.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 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 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 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 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 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 경찰관리는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 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신 설>

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하여서 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 용한다.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 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 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하여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 용한다.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

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 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 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 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 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

<신 설>

<신 설>

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 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 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 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
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
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
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준수사항) 사법경찰관

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본래 범 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 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 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 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 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
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
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
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